대체휴무 등 공휴가산 관련

Q. 근로자의 날(5월 1일)과 대체공휴일에 진료를 한 경우 공휴가산이 적용되나요?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의 날(5월 1일)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에서 말하는 '공휴일'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대체공휴일은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m·비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)」에 의한 공휴가산은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 국의 공휴일로 한다.

2. 국경일 중 3 · 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
1. 일요일

- 3. 1월 1일
- 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- 6. 석가탄신일 (음력 4월 8일)
- 7. 5월 5일 (어린이날)
- 8. 6월 6일 (현충일)

5. 삭제 <2005.6.30.>

- 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 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- 10. 12월 25일 (기독탄신일)
- 11. 「공직선거법」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- 12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제3조(대체공휴일)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[본조신설 2013.11.5.]